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체정 2000. 6. 26.
개정 2000. 8. 17.
개정 2000. 11. 25.
개정 2001. 1. 3.
개정 2001. 4. 20.
개정 2001. 7. 2.
개정 2001. 12. 26.
개정 2002. 2. 4.
개정 2002. 12. 21.
개정 2003. 2. 19.
개정 2003. 3. 29.
개정 2004. 3. 2.
개정 2004. 8. 25.
개정 2005. 8. 5.
개정 2006. 3. 24.
개정 2007. 11. 8.
개정 2008. 8. 7.
개정 2009. 2. 12.
개정 2010. 12. 16.
개정 2011. 8. 11.
개정 2011. 11. 3.
개정 2011. 12. 15.
개정 2012. 8. 2.
개정 2013. 6. 12.
개정 2013. 9. 17.
개정 2014. 6. 20.
개정 2015. 12. 28.
개정 2016. 2. 4.
개정 2016. 12. 16.
개정 2017. 5. 26.
개정 2017. 7. 18.
개정 2017. 9. 20.
개정 2017. 12. 18.
개정 2018. 3. 20.
개정 2018. 8. 2.
개정 2019. 11. 28.
개정 2020. 8. 14.
개정 2020. 12. 4.

개정 2021. 9. 28.

개정 2021. 11. 2.

개정 2021. 11. 17.

개정 2021. 12.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단 공무원관리규정을 따르며 임금피크제도 적용대상자의 보수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9-2-12., 2011-8-11., 2015.12.28., 2021.9.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3-29, 2008-6-5, 2008-8-7, 2009-2-12, 2011-8-11 >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2018-8-2>

제2장 봉급

제4조(봉급) 임·직원의 봉급액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개정2002.2.4>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5조(호봉획정과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이사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6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획정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②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③ 임원에 대하여는 호봉을 획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 획정한다. <개정 2021.9.29.>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 획정 한다.
3.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 획정하되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8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 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일은 매월 1일자로 한다. <개정2001·4·20, 2008·6·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

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제9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 공단의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9조의2(전직시의 호봉획정) 인사규정 제29조(전직)에 따라 전직된 자의 호봉획정은 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 정한다. <신설2014.6.20>

제10조(강입시의 호봉획정) ① 공단의 직원이 강입하는 경우에는 강입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강입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1이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입되기 전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입된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제11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개정2010.12.16., 2021.9.28.>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1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2018.3.20., 2021.9.28.>

강등,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의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제12조(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 승급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개정2010.12.16., 2021.9.28.>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및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시간
4.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

강 등 : 9년

정 직 : 7년

감 봉 : 5년

견 책 : 3년

제13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확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4장 보수지급

제14조(보수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 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차 휴가수당과 12월분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은 12월 말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2·12·21, 2004. 8. 25>

제15조(보수의 계산) ①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승진, 승급,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의 계산은 매월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

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근속연수에 불구하고 당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16조(보수의 감액) ① 연차휴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8.25>

② 무계 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9.2.12>

④ 삭제 <2009.2.12>

제17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임·직원에게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③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 또는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한다.

④ 병역법에 의한 징집, 천재지변, 전지사변 및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지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육아휴직의 급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3.3.29.>

제1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①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

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수당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제2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 확정하고, 동 처분으로 하여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1조(보수지급 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다른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수당

제22조 삭제 <2006.3.24.>

제23조(장기근속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정근수당가산금을 적용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2-12, 2021.11.2.>

② 제1항의 근무연수는 별표 2의 경력과 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력연수로 한다.

③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2-12>

제24조(대우수당, 정직 등) ①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원의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수당으

로 지급한다. <개정 2006.3.24, 2013. 6. 12>

②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대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2.12>

제25조(기술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9.28.>

1. 전기, 통신, 난방, 기계분야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법적 자격증을 소지한 선임자 또는 법정선임자 <개정 2017.9.20.>
2. 해당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7.9.20.>

제26조(시간외 근무수당 등)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제27조(연차수당) ① 공단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4.8.25>

② 연차수당은 공단 직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연차기간은 공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년을 계산한다.<개정 2009.2.12, 2012.8.2>

제27조의2(휴가 및 휴직기간의 수당)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수당(단,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제외)을 지급한다.

<개정 2016.2.4.>

[본조신설 2001.12.26.]

제28조(당직수당)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수당을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9조(위험근무수당) 직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가족수당)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

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4, 2009.2.12>

② 제1항의 “부양가족” 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여건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00.8.17., 2021.9.28.>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개정 2018·3·20>
3.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개정 2018·3·20>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19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개정 2018·3·20>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2.12, 개정 2018·3·2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1.9.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개정 2021.9.28.>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

급부터 제6급까지 <개정 2021.9.28.>

- ④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 ⑥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2.12>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직원의 배우자가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8.3.20>
 1.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 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⑧ 이사장은 소속직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8.3.20><개정 2020.8.14.>

제31조 삭제 <2021.11.2.>

제32조 (관리업무수당) ① 관리업무수당은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다.

- ②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3조(운영수당) 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5의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경영평가평가급) ①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급율과 지급방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개정 2011.12.15.,2015.12.28.>

- ② 경영평가평가급은 공인기관의 경영평가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한 실적에 따

라 이사장이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경우에 지급한다.<개정2011.12. 15.,2016.12.16.>

[제목개정 2016. 12. 16.]

제34조의3(명예퇴직수당) ① 공단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긴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근속기간은 제36조를 준용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정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2000·11·25]

제34조의4(조기퇴직수당)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 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근속기간은 제36조를 준용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③ 이사장은 공단의 직제 및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 신청절차는 제3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절차를 적용한다.

⑥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등)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

(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 (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결정은 공단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⑧ 조기퇴직수당 지급액은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1.25.]

제6장 퇴직급여금

제35조(퇴직급여금) ① 퇴직급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별표 7의 퇴직급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에 지급된 봉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를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명절휴가비 및 연차수당은 당해 연도 지급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11-8-11, 2017.12.18.>

제36조(근속연수) 근속연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로부터 퇴직 전일까지로 하며 365일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군 입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나 업무와 연관 없는 연수(유학)로 휴직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2001·1·3, 개정 2018-3-20>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일할 계산한다. <개정2001·1·3>

3. 직제의 개정과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개정2001·1·3>

제37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임·직원이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지급을 유보한다. <전문개정 2009.2.12>

제38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15.12.28.>

제7장 복리후생

제40조(후생기구 및 시설) 공단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직장 새마을금고와 구내식당 및 휴게소,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8.11>

1. 정액 급식비
2. 직급 보조비
3. 명절 휴가비
4. 대민활동비 [신설 2021.12.10.]
5. 특정업무수행경비 [신설 2021.12.10.]

②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휴직 및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2.19>

제42조(피복지급) 공단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내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3조(건강진단) 임·직원에게 대한 건강진단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4조(의료시설)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 내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재해보상) ①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공단

이 이를 보상한다.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유족보상

③ 요양보상은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상은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에 의거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장애구분은 국·공립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로 한다.

⑤ 유족보상은 임·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월액의 36배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1.1.3.>

제46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 보상의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7조(보상의 경감)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준용)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49조(체육행사 등) ① 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 설치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시 취미단체를 육성 발전토록 적극 지원한다.

제50조(장기근속자 특별휴가) 공단에서 20년 이상 재직 시에는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2회 이내에서 일괄 또는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당해 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에 대하여 안성시 공무원지원범위 내에서 시행한다.<신설 2019.11.28.>

제8장 보칙

제51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여비 등은 내규로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1.28.>

제52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 시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삭한다.<개정 2019.11.28.>

제53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9.11.28.>

부 칙<2000·6·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0·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4>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2·19>

이 규정은 2003.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의 봉급 기준표는 2003.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3·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8·25>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8]의 정액급식비는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8·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1·8>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1. 0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5]의 운영수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2.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1]의 기능5급 봉급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5.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별표2]의 갑 경력 중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근무경력”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5]의 휴일근무수당은 2018년 3월 20일부터, [별표1-1] 및 [별표 5]의 운영수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직원의 봉급 기준표는 2017년 봉급에 1.2% 인상한 금액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8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9. 11. 2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1], [별표5] 및 [별표8]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8.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1] 및 [별표5]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9.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 지급한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개정2001.7.2,2002.2.4,2003.2.19,2004.3.2, 2005.8.5, 2012.8.2.,2016.12.16., 2017.5.26. 2017.12.18., 2021.9.28., 2021.11.2.>

임원의 봉급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봉 급
이 사 장 (지방공무원 4급25호봉)	지 방 공 무 원 보 수 기 준 표 적 용
상임이사 (지방공무원 5급 19호봉)	

직원의 봉급 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지방공무원 5급	지방공무원 6급	지방공무원 7급	지방공무원 8급	지방공무원 9급	<삭제>
	일반3급	일반4급 기능1급	일반5급 기능2급	일반6급 기능3급	일반7급 기능4급	기능5급
1 2 3 · · · 32	지 방 공 무 원 보 수 기 준 표 적 용 (기능5급은 봉급 기준표 [별표1-1]을 적용)					

<삭 제>

승진시 호봉 획 정 표 <신설2001.7.2.><개정2017.5.26.>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별표1-1] [신설2016.12.16.]<개정2017.7.18., 개정2018.8.2., 개정2019.11.28., 2020.12.4., 2021.11.17.>

기능5급 봉급 기준표

호봉	기본급	호봉	기본급
1	1,527,360	17	2,488,570
2	1,542,400	18	2,542,630
3	1,573,870	19	2,596,470
4	1,620,650	20	2,646,280
5	1,684,610	21	2,694,180
6	1,761,860	22	2,740,210
7	1,838,440	23	2,784,380
8	1,913,060	24	2,825,610
9	1,983,730	25	2,866,440
10	2,052,790	26	2,904,090
11	2,119,060	27	2,935,420
12	2,186,080	28	2,966,370
13	2,251,210	29	2,996,340
14	2,314,530	30	3,025,140
15	2,375,020	31	3,052,870
16	2,432,900		

[별표2] <개정 2014.6.20., 2017.7.18.>

경 력 환 산 표

구 분	경 력	환산율
갑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 군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방위병 근무기간 포함) ○ 청원경찰, 청원산림 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근무경력 	100%
을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무기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경력 ○ 공공단체 근무경력 ○ 교육, 연구기관에서 기계, 전산, 전기등 해당분야 종사 경력 	80%
병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종사원 30인 이상)근무경력 또는 산업기능요원(종사원 30인 이상) 근무경력 	50%

[별표3] <개정 2008.8.7, 2009.2.12>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구 분	직 위 해 제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4할	수당액의 5할

[별표4] 삭제 <2009.2.12>

[별표5] <개정 2000.11.25, 2001.4.20, 2001.7.2, 2001.12.26, 2004.3.2, 2004.8.25, 2006.3.24, 2007.11.8, 2008.8.7, 2011.11.03, 2015.12.28., 2017.9.20.2018.8.2., 2019.11.28., 2020.12.4., 2021.11.2., 2021.11.17.>

수 당 지 급 기 준 표

구 분	지급을 또는 지급금액	비 고
기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사 : 월 50,000원 ○ 기 사 : 월 30,000원 ○ 산 업 기 사 : 월 25,000원 ○ 기 능 사 : 월 20,000원 ○ 운 전 원 : 월 40,000원 ○ 기타(공단운영에 필요한 자격증): 월 30,000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기능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법적자격증을 소지한 선임자 또는 법정선임자에게 지급하며 여러개의 자격을 소지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을 인정한다. 단, 최초 임용시 해당직렬자격증을 소지하고 채용된 자 중 지급일 현재까지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 및 본 업무 이외의 기술, 기능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사서수당		상 동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209시간	
휴일근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임금 × 1.5/209시간(8시간 이내) ○ 통상임금 × 2.0/209시간(8시간 초과) 	근로시간(40시간)내 휴일은 연장근로가산 수당 지급 제외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 × 0.50/209시간	
연차근무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당직수당	○ 일직·숙직 : 시의 일·숙직수당적용	
위험근무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삭 제>	<삭 제>	
운영수당	○ 봉급의 5.6%	임직원
관리업무수당	○ 봉급의 9%	임 원

【별표6】 <개정2000·11·25, 2001·1·3> [제목개정2016.12.16.]

경영평가평가급 지급표

등 급	지급율(상한)	지 급 기 준
가(수) 급 나(우) 급 다(미) 급 라(양) 급 마(가) 급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당해연도 지급율	전년도 공인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신청하여 시장이 등급 및 지급결정

[별표6-1] 삭제 < 2011.12.15 >

[별표7] <개정2001·1·3>

퇴직급여 지급률표

구 분	지 급 율
임·직원	평균보수월액 × 근속년수

[별표8] <개정 2001. 4. 20, 2003. 2. 19, 2004. 8. 25, 2005. 8. 5, 2006. 3. 24, 2009. 2. 12, 2011. 8. 11, 2018. 3. 20, 2019. 12. 28., 2021. 11. 2., 2021. 12. 10.>

복리후생비 지급구분표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정액급식비	직 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매월 20일 지급
직급보조비	이사장 3급 4급 5급 6 ~ 7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4급 기능5급	월400,000원 월250,000원 월165,000원 월155,000원 월145,000원 월165,000원 월155,000원 월145,000원 월135,000원	매월 20일 지급
대민활동비	4급~7급 기능1~5급	월50,000원	매월 20일 지급
특정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	월80,000원	매월 20일 지급
명절휴가비	직 원	연 120%	매년 설날, 추석에 속하는 달에 봉급의 60% 지급

*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특정업무수행경비와는 병급할 수 없음

*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업무담당분야를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함.

[별표9]

신체장애등급과 재해 보상표

등 급	재 해 보 상	등 급	재 해 보 상
제 1 급	1,340일분	제 8 급	450일분
제 2 급	1,190일분	제 9 급	350일분
제 3 급	1,050일분	제 10 급	270일분
제 4 급	920일분	제 11 급	200일분
제 5 급	790일분	제 12 급	140일분
제 6 급	670일분	제 13 급	90일분
제 7 급	560일분	제 14 급	50일분

[별표10] <신설2000 · 11 · 25>

명예퇴직수당 지급표

정년 잔여기간	지 급 율	지급대상
1년이상 5년이내	퇴직당시 월기본급×1/2 ×정년잔여월수	임 · 직원
5년초과 10년이내	퇴직당시 월기본급×1/2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초과	정년잔여기간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별지제1호】 <신설2000·11·25>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소 속		②직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③직급 또는 등 급	(호봉)
④성 명	(한글)	⑤주민등록번호	-		
	(한자)	⑥주 소	□□□□□		
⑦전화번호 (자 택)		⑧근속년수	년 월	⑨ 정년일	년 월 일
⑩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⑬ 산 출 내 역			
<p>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 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 신청인 (인)</p>					
⑭확 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소속부서의 장) (인)</p> <p>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p>					

작성요령

1. ②는 해당란(□)에 V 표시함.
2. ⑧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⑩은 해당란 V 표시함.
4.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5. ⑩, ⑪, ⑫, ⑬은 당해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7.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제2호】 <신설2000·11·25>

명예퇴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인 (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지 제3호】 <신설2000 · 11 · 25>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직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직급또는 등 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 택)		근속년수	년 월	최초임용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				
<p>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보수규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 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 신청인 (인)</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확 인</td> <td style="padding: 5px;">인사담당</td> <td style="padding: 5px;">(인)</td> </tr> </table> <p>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소속부서의 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p>						확 인	인사담당	(인)
확 인	인사담당	(인)						

【별지제4호】 <신설2000·11·25>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인 (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